



#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


수신처 수신처 참조  
(참 조)

## 제 목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

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바, '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' 신규 대상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  - 가. 사 업 명 :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
  - 나. 모집기간 : 2019.06.24.(월) ~ 2019.07.12.(금) 18:00까지
  - 다. 대 상 자 : 경기도 내 독립생활이 가능한 회복된 정신질환자
  - 라. 모집지역 : 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고양시, 남양주시 (인근 지역 지원가능)  
※ 자세한 입주 주택 현황은 붙임 참고
  - 마. 지원방법 :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(gpmhc@hanmail.net) 접수
  - 바. 지원서류 : 붙임서류 2,3,4 /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  - 사. 문 의 : 회복지원팀 위지훈 031-212-0435 (내선6446)

- 붙임 1.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안내 1부  
2.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 1부  
3. 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 1부  
4. BPRS, GAF 각 1부. 끝.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



수신처 : 도 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정신의료기관

---

담당 위지훈	팀장 김정진	부센터장 윤미경	센터장 이명수
시행: 경기정신건강19-197(2019.06.21.)		접수:	
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		전화: (031)212-0435	전송: (031)212-0442
(정자동) 경기도 의료원 2층		(내선6446)	
홈페이지 <a href="http://www.mentalhealth.or.kr">http://www.mentalhealth.or.kr</a>		전자우편 <a href="mailto:gpmhc@hanmail.net">gpmhc@hanmail.net</a>	

## 붙임 1.

#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안내

## 1

### 추진배경

-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복지사업 공공(국민)임대주택 이용률이 정신장애의 경우 5.1%(청각장애 8.3%, 자폐성 장애 12.3%)로 매우 낮음.
-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과제 중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하게 되어있음. 이에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.

## 2

###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경기도 내 독립생활이 가능한 회복된 정신질환자
- 입주지역 : 서울본부 소관 내 5개 권역 중 4개 시·군 (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남양주시)  
인천본부 소관 내 1개 권역 중 1개 시·군 (고양시)  
※ 입주지역 시군은 차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, 입주 주택 확보 후 추가 모집 공지 예정
- 모집기간 : 2019.06.24.(월) ~ 2019.07.12.(금) 18:00 까지
- 지원서류 :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[붙임2] ※ 대상자가 직접 작성  
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[붙임3],  
BPRS, GAF[붙임4],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- 지원방법 :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(gpmhc@hanmail.net) 접수
- 지원내용
  -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 지원
  -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진행
- 문 의 : 회복지원팀 위지훈 031-212-0435 (내선6446)

## 3

## 입주 주택 현황

시군	주소	면적/층			옵션	비고	월임대료
1	동두천 동두천동	16평	투룸	2층	신발장, 가스레인지	동두천역 도보 10분, 인근 학교	125,530원
2	양주 백석읍	16.3평	쓰리룸	1층	신발장, 가스레인지	인근 버스정류장, 산책로	72,330원
3	포천 선단동	19.7평	쓰리룸	5층	신발장, 가스레인지, 엘리베이터	인근 편의점, 버스정류장	154,380원
4	남양주 호평동	4.5평	원룸	4층	신발장, 인덕션, TV,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	인근 편의시설 많음, 인근 초,중,고등학교	127,380원
5	고양시 행신동	5평	원룸	1층	신발장	빌라단지, 인근 공원	49,580원

※ 월 임대료는 계약 시 변동 가능

※ 투룸 이상의 경우, 다른 대상자와 함께 거주 가능

## 4

##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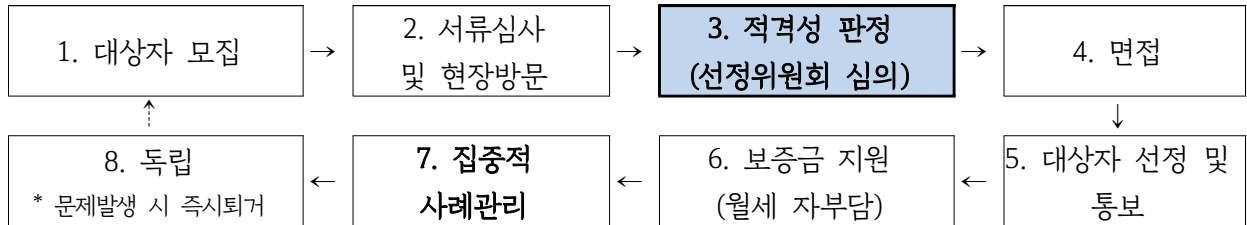
## 1. 대상 자격 및 입주 조건

대상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, 정신과 치료 유지 중인 대상자 중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 ※ 경기도 외 거주자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</li> <li>②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</li> <li>③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중이거나 등록 예정인 자</li> <li>④ 돌아갈 안정적 주거지 없이 시설(입소생활시설, 주거제공시설, 공동생활가정, 병원 등)에 입소 중이나 재활의 준비가 된 자</li> <li>⑤ 명확한 거주지가 없는 자(고시원, 쉼터, 보호센터 등)</li> </ul>
입주 기간	<p>설정목표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입주기간 결정 (입주기간 중 2년마다 재계약 진행되며, 평가에 따라 입주기간 조정 가능)</p>
입주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속적 사례관리 유지</li> <li>② 규칙적인 약물 복용 및 치료 유지</li> <li>③ 임대료(월세) 및 주거 관리비(전기, 수도, 난방) 자부담</li> <li>④ 화재보험 가입</li> </ul>

⇒ 상기 5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

⇒ 지원시군 : 해당 독립주거지 시군이 아니어도 인근 시·군에서 지원 가능함.

## 2. 대상자 선정 과정



### 가. 대상자 모집

-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(대상자 작성) 및 의뢰서(사례관리자 작성) 제출

제출처 : Head Quarter (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)]

※ 제출 서류 - ①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[붙임2] \*대상자가 직접 작성

② 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[붙임3]     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
### 나. 입주 적합 심사 및 판정

-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Head Quarter기관이 1차 자격심의를 진행
-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조건 충족 시 선정위원회\*에서 적합여부를 평가함.

#### ※ 선정 위원회

- 구 성 :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외부 전문가, 사례관리자 등
- 운영방안
  - ① 의뢰 접수 후 대상자 상담 및 기초 조사를 통해 1차 평가
  - ② 선정회의 개최하여 대상자 평가 및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

### 다. 주택 배정 및 입주 적응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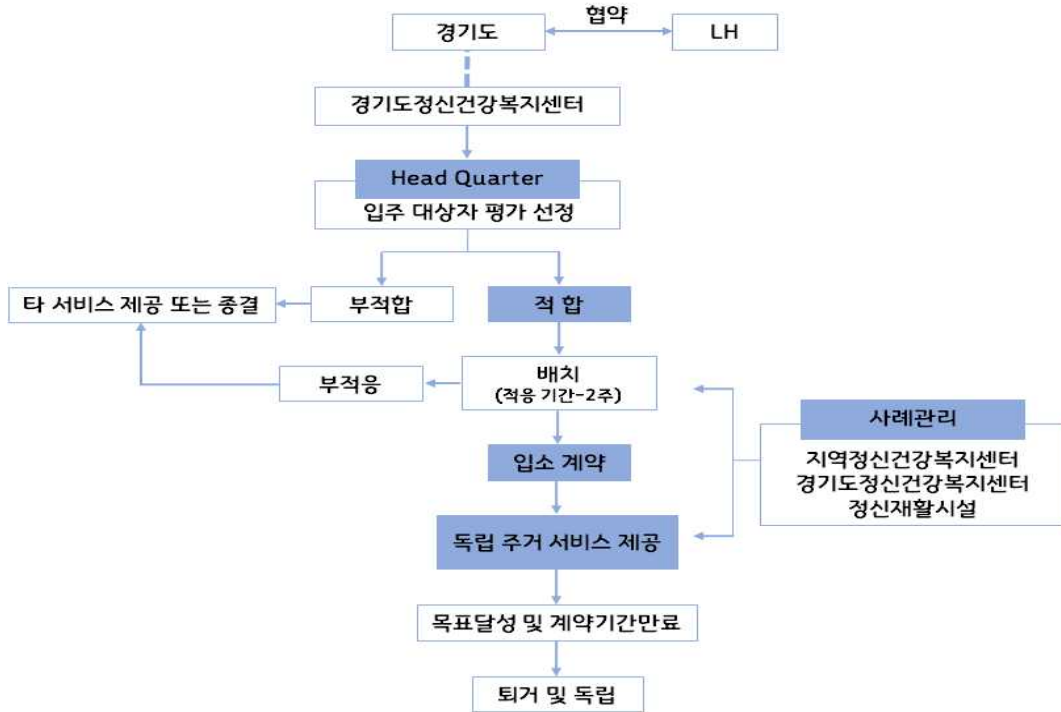
- 입주자는 배정 받은 주택에서 2주간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짐.

※ 입주 시, LH 권역별 시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(의료보호증),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### 라. 계약 및 입주

- 최종심의 결과를 대상자 및 지역사례관리자에게 통보 후 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

### 3. 독립 주거 지원사업 흐름도



### 4. 각 기관별 역할

기 관	역 할	비 고
경기도	주택 확보, 운영기관 선정, 정책 기획 및 예산지원	
LH	주택 공급 및 관리, 운영기관이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	
경기도 정신건강 복지센터	사업 예산 운영 및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응 기간 동안은 집중사례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 관리 진행 (주 1회 이상 방문)</li> <li>-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개입 및 실무자 회의 개최</li> </ul>
	실적 및 주거지원 서비스 대상자 관련 서류 취합 보고	
	주거지원 사례관리 (대상자 모니터링, 주거지 및 생활상태 점검 등)	
시·군 정신건강 복지센터	사업 결과보고서 발행	
	대상자별 자립계획 수립 및 지원	
	사전 사후 평가 / 대상자 모니터링, 전후 활동사진 및 경험수기 제출	
	입주초기 _ 집중 사례관리 입주 안정기 _ 일상생활 전반적 사례관리	

※ 계약 체결 이후 대상자 문제 발생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퇴거 여부가 결정되며, 퇴거 시 새로운 대상자가 입주하도록 함.

## 5. 주거서비스 종료

- 서비스 계약 해지 신청은 퇴거일(이사 나가는 날)보다 최소 두 달 전까지 독립주거 서비스 종료준비 계획서 및 퇴거 요청서를 제출
- 퇴거 일까지 임대료가 부과되며 입주 대상자는 퇴거 전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